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2p 16~21줄 ③ 법과 종교	문제-본문	③ 법과 종교 ㉠ 공통점 : 종교는 관습·도덕과 함께 중요한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차이점 : 종교는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사람의 사회생활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내부적 의사를 규율하므로 의사 중심의 외면성을 갖는다. 반면에 법은 행위 중심의 외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법과 종교 ㉠ 공통점 : 종교는 관습·도덕과 함께 중요한 사회규범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 차이점 : 종교는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절대적인 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사람의 사회생활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내부적 의사를 규율하므로 의사 중심의 내면성을 갖는다. 반면에 법은 행위 중심의 외면성을 가지고 사회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범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77p 번호 : 10	해설	10. 경비건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건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② 경비건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경비건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경비건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① 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인한 손괴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67조 ③ 민법 제750조 ④ 민법 제759조 정답 ❶	10. 경비건을 보관하는 경비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비원의 과실로 경비건이 고객의 애완동물을 죽인 경우, 형사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을 진다. ② 경비건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사망케 한 경우, 형사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경비건이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경비건의 보관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을 입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① 형사상 재물손괴죄는 과실로 인한 손괴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상의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형법 제267조 ③ 민법 제759조 제1항 본문 · 제2항 ④ 민법 제759조 제1항 단서 · 제2항 정답 ❶
591p 14번 해설 번호 : 14	오타	14.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❹	14.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제2호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❹
651p 2020년 법학개론 기출문제해설 번호 : 10	해설	②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② 계엄선포권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663p ③번 지문 해설 번호 : 29	오타	상법은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상법 제73조 본문), 70세 이상인 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법은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상법 제732조 본문), 70세 이상인 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